

『하나 청년희망적금』 요약 상품설명서

[기본정보]

(2022.02.09 현재, 세전)

구분	내용	
상품특징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자산형성지원 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의 가입자격 참조	
판매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 (※ 정부정책 및 관련법을 등이 변경될 경우 판매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상품유형	적립식예금	
계약기간	2년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매월 1천원 이상 ~ 50만원 이하 (천원 단위)	
기본금리	연 5.0% (※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	최대 연 0.7% ① 급여 및 주거레이체 실적 0.2% ② 신용카드 결제실적 0.2% ③ 청약 신규 및 보유 0.2% ④ 마케팅등의 0.1%	
저축장려금	정부가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이 예금을 만기 해지시 최대 36만원 지급	
일부해지	x	불가
세제혜택	○	비과세상품으로만 가입가능
예금담보대출	○	납입액의 100%까지 가능
예금자보호	○	원금과 이자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유의사항]

※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99-1111,0,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중도해지금리	기간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주1) x 경과율 ^(주2) (단,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주1) 차등율 : 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11개월 이상 경과시
	60% 적용	70% 적용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 / 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세째자리까지 적용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만기 후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½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¼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자 불필요한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자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 청년희망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예시:유선 가입시는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등),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하나 청년희망적금』
- 상품특징 :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자산형성지원 상품

2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증서)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약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2.02.09 현재, 세전)

구분	내용		
가입대상	아래의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1.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2. 직전 과세기간 기준, 총 급여액이 3천6백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 3.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유의사항 참조		
거래방법	신규 및 해지: 영업점, 스마트폰뱅킹	상품유형	적립식예금
판매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 (※ 정부정책 및 관련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판매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가입금액 및 적립한도	매월 1천원 이상 ~ 50만원 이하 (천원 단위)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		
기본금리	연 5.0%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 (연 0.70%)	아래의 우대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0.7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항목	내용	
	① 급여 및 주거래이체 (연 0.20%)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일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급여입금 ^(주1)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및 주거래 이체 ^(주2) 실적을 같은 월에 모두 보유한 경우 (월1회 인정) ※ 1회차 인정요건 : 급여입금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 주거래이체 ※ 예시 (22년 3월) 급여입금 + 아파트 관리비 출금 : 1회차 인정 (22년 4월) 가맹점대금 입금 + 신용(체크)카드 결제대금 출금 : 1회차 인정 (22년 5월) 급여미입금 + 공과금 출금 : 1회차 미인정	
	② 신용카드 결제실적 (연 0.20%)	이 예금 가입일의 익월부터 만기 전전일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하나 신용카드 결제 실적을 보유한 경우 (월 1회 인정) ※ 단, 하나 체크카드 실적 미인정 ※ 신용카드 결제실적 보유시, 주거래 이체항목과 중복 우대 해당 ※ 예시: 우대항목 ①번 충족시 0.2% + ②번 충족시 0.2% = 0.4% 우대금리 적용	
	③ 청약 신규 및 보유 (연 0.20%)	이 예금 가입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하고 만기시점까지 보유시	
④ 마케팅동의 (연 0.10%)	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1)급여입금 인정기준: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월급,연봉,봉급,상여, 성과,보너스,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 (주2) 주거래이체 인정기준: 하나카드 결제(신용/체크), 자동이체를 통한 아파트관리비 출금 및 공과금 출금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원미만 절사)

기간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주3) x 경과율 ^(주4) (단,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중도해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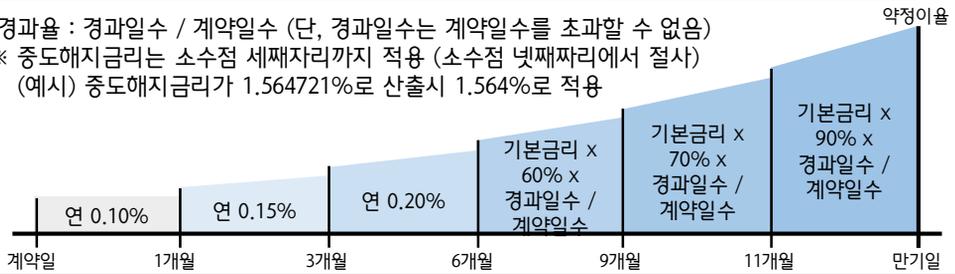
(주3) 차등율 : 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11개월 이상 경과시
60% 적용	70% 적용	90% 적용

(주4) 경과율 : 경과일수 / 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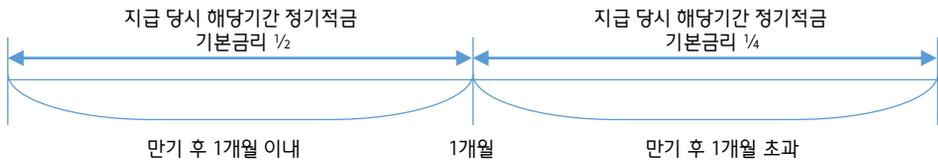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세째자리까지 적용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만기 후 금리

- 1개월 이내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 1개월 초과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4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만기전일]



만기자동재예치

불가

일부해지

불가

특별중도해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 7 제8항에 따라 특별중도해지사유 발생시, 비과세 혜택 적용 및 저축장려금 지급 가능 (단,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특별중도해지사유

① 가입자의 사망 ② 해외이주

③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사유 발생시

: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

질병 발생, 금융회사 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단, 특별중도해지시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득세가 부과됨

만기앞당김지급

불가

**세제혜택
(개인,개인사업자)**

- 비과세로만 가입 가능 (연 600만원 한도내) ※자세한 사항은 유의사항 참조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중도해지 및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양도 및
담보제공**

양도 및 명의변경 불가하며, 질권설정은 가능함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가능)

자동이체

적립한도 이내에서 자동이체 등록 가능

※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약해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점, 비대면채널(스마트폰뱅킹) 및 자동 만기해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지 가능합니다. ※ 비대면 채널에서의 해지는 일부 제한사항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만기가 휴일인 경우 만기일 이후 영업일에 해지하여야 비과세 혜택 및 저축장려금 지급 가능합니다
통장발행	이 예금은 통장 미발행이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휴면예금 및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0,1), 고객의 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여부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해당</p>  </div> <div> <p>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p> </div> </div>

3

저축 장려금

의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해지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									
지원금액	<p>만기일 전일까지 납입액 기준, 적립기간 별 차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 (최대 36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적립기간</th> <th>계산방식</th> <th>지원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2개월 이내</td> <td>1개월~12개월 적립금액의 2%</td> <td>최대 12만원</td> </tr> <tr> <td>24개월 이내</td> <td>13개월~24개월 적립금액의 4%</td> <td>최대 24만원</td> </tr> </tbody> </table>	적립기간	계산방식	지원금액	12개월 이내	1개월~12개월 적립금액의 2%	최대 12만원	24개월 이내	13개월~24개월 적립금액의 4%	최대 24만원
적립기간	계산방식	지원금액								
12개월 이내	1개월~12개월 적립금액의 2%	최대 12만원								
24개월 이내	13개월~24개월 적립금액의 4%	최대 24만원								
지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기해지시 납입원금 및 이자와 합산하여 지급 (비과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축장려금은 은행이자와 달리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해지일까지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저축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및 중도해지 계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분	내 용										
가입대상	나이 요건	<p>① 신규가입일 기준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법상 거주자에 한함)</p> <p>②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34세 이하 포함</p>									
	소득 요건	<p>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p> <p>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p> <p>③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가입시기</th> <th>소득요건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월 ~ 6월</td> <td>전전년도 소득</td> </tr> <tr> <td>7월 ~ 12월</td> <td>전년도 소득</td> </tr> </tbody> </table> <p>④ 이 예금의 가입을 위한 소득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합니다</p>	가입시기	소득요건 기준	1월 ~ 6월	전전년도 소득	7월 ~ 12월	전년도 소득			
	가입시기	소득요건 기준									
1월 ~ 6월	전전년도 소득										
7월 ~ 12월	전년도 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p>①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함</p> <p>②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으로 부적격시 추가납입 불가</p>										
세제혜택 (비과세)	<p>가입시기에 따른 비과세요건 기준 및 미충족시 변경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가입시기</th> <th>비과세요건 기준</th> <th>비과세요건 미충족시</th> </tr> </thead> <tbody> <tr> <td>1월 ~ 6월</td> <td>전년도 소득</td> <td>· 일반과세로 전환 · 만기해지시 저축장려금 지급</td> </tr> <tr> <td>7월 ~ 12월</td> <td>전년도 소득</td> <td>추가납입 불가</td> </tr> </tbody> </table>		가입시기	비과세요건 기준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1월 ~ 6월	전년도 소득	· 일반과세로 전환 · 만기해지시 저축장려금 지급	7월 ~ 12월	전년도 소득	추가납입 불가
가입시기	비과세요건 기준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1월 ~ 6월	전년도 소득	· 일반과세로 전환 · 만기해지시 저축장려금 지급									
7월 ~ 12월	전년도 소득	추가납입 불가									

이 예금은 하나은행 DailyBanking 본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111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	설 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